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82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이헌승 · 이성권 · 김상훈
김소희 · 송석준 · 이종배
박덕흠 · 정성국 · 박성훈
유용원 · 김선교 · 서지영
김도읍 · 김재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긴급 필요시의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 조치의 기간 및 절차, 조치의 해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긴급 필요시의 조치)</u> <u>①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 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태의 발생으로 가상자산 시장 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 자에 대하여 거래제한, 출금 중 단,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기준, 조치의 기간 및 절차, 조 치의 해제 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